



의안번호

제65호

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월일	2021. 5. 17.

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제65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1. 5. 17.
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1. 제정이유

- 시민 문화향유권 확대와 논산시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의 관리·운영 제반사항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문화체험형 관광시설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~제8조)
- 나. 문화체험형 관광시설의 시설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0조~제15조)
- 다. 양도금지 규정(안 제1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36조, 제139조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기타사항
 - 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 - 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 - 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 - 4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1. 3. 19. ~ 2021. 4. 8.(20일)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 - 5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관광진흥과

□ 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논산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관광 경쟁력 확대를 위해 설치한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(이하 “체험시설”이라 한다)”이란 문화·예술·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전시회 등의 개최·대관을 위해 설치한 기본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.
2. “사용자”란 체험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.
3. “사용료”란 체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
제3조(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) 이 조례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체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

제4조(주요사업) 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1. 문화·예술·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2. 공연 및 각종 전시회 개최
3.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개관 및 휴관) 시장은 체험시설을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. 다만,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.

1. 1월 1일, 설날, 추석
2. 매주 월요일. 단,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
3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

제6조(운영시간 등) ① 체험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하절기(3월 ~ 10월) : 09:00 ~ 18:00

2. 동절기(11월 ~ 2월) : 09:00 ~ 17:00

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조정내용은 논산시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다.

제7조(프로그램 운영) ① 시장은 체험시설에서 다양한 전시·공연·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, 재료비는 수강생이 별도로 부담한다.

제8조(시설 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산시가 출연한 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, 「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사용·수익허가) 시장은 체험시설의 일부를 법인·단체 및 개인에게 사용·수익허가 할 수 있다.

제10조(사용허가) ① 체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설물의 관리·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,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하거나 보험가입 등의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.

제11조(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)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2.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
3.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2.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
3.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2조(사용료의 납부)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.

제13조(사용료의 반환) ① 시장은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관리·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
2.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
3.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제14조(사용료 면제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
2. 논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
3.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행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(시설의 설치 등)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

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.

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될 때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
③ 사용자는 설치한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설치한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.

④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대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.

제16조(양도금지) 시설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
제17조(별칭사용) 체험시설의 홍보와 대중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관 광 과 장	김 영 민
	관 광 개 발 팀 장	유 현 숙
	담 당 자	김 보 라 (7 4 6 - 5 7 4 4)

【별표 1】

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(제3조 관련)

명 칭	기 능	주요시설	비 고
연산문화창고 (논산시 연산면 선비로231번길 28)	1. 문화예술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 2. 공연 및 전시 3. 동호회, 자치활동 등을 위한 공간 대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프로그램실(1,2) · 커뮤니티홀(1,2) · 다목적홀 · 공유주방 · 수제맥주공방 · 체험놀이터 · 카페 등 	
조동숲숲 (논산시 벌곡면 벌곡로330번길 29-44)	1. 생태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 2. 가족놀이터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활동실 · 숲놀이터 · 체험프로그램실 · 카페 등 	
논산 청소년 문화예술 플랫폼 (논산시 가야곡면 원양로 495-2)	1.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강좌 운영 2. 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창작실 · 연습실 · 실현실 · 다목적홀 · 야외공연장 · 카페 등 	

【별표 2】

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사용료기준(제12조 관련)

○ 연산문화창고

- 기본시설 사용료

시설명	구분	면적	사 용 료(원)			비 고
			오전	오후	야간	
프로그램실1 (WHITE BOX)		107㎡	20,000	25,000	30,000	1일 50,000
프로그램실2 (BLACK BOX)		166㎡	30,000	35,000	40,000	1일 60,000
다목적홀		360㎡	20,000	30,000	30,000	1일 50,000
공유주방		44㎡/ 최대10명	10,000원/ 시간당			
커뮤니티홀1		51㎡/ 최대20명	5,000원/ 시간당			
커뮤니티홀2		50㎡/ 최대20명	5,000원/ 시간당			
비 고	*사용시간 - 오전 : 09:00~13:00 - 오후 : 13:00~18:00 - 야간 : 18:00~22:00 - 1일 : 09:00~22:00					
	*기타사항 1.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이용시에는 당해 임대료의 50퍼센트로 함 2. 당일 공연 또는 행사 후 철거를 위한 22시 이후 이용시에는 야간 임대료의 50퍼센트로 함 3. 1시간 이상 초과이용 시 다음회 임대료의 전액을 가산함 4. 기본설비(조명, 음향장치) 지원					

- 수제맥주공방 비품 사용료

구분	설비 및 비품 /수량	사 용 료
1세트	당화조 1개, 발효조 2개 기타양조비품(메스실린더, 맥주비중계, 계량컵, 온도계)	35,000원 (1회 완곡 양조 기준)
* 참고사항 1. 공동 사용: 저울, 분무기, 소독제, 발효조 오프너, 설탕 등 2. 맥주 양조 재료 본인 준비		

【별표 3】

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사용료 반환기준(제13조 관련)

구 분	반환사유(반환 신청일)		반환기준	비 고
시 설 사용료	① 관리·운영주체의 귀책사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		100퍼센트	
	② 사용자의 귀책사유	사용개시 10일 전 까지	100퍼센트	
		사용개시 5일 전 까지	80퍼센트	
		사용개시 3일 전 까지	70퍼센트	
		사용개시 1일 전 까지	50퍼센트	

【별지 제2호서식】

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사용(변경)허가서

사 용 자	성명(법인명)		연락처(☎)	
	대표자명		법인번호	
	주 소			
이용시설 및 장소	연산문화창고	다목적홀(), 공유주방() 커뮤니티홀1(), 커뮤니티홀2() 프로그램실1(), 프로그램실2() 수제맥주공방()		
사용기간 및 시간	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(일 시간 회)			참가인원
	명			
공연·교육·전시 등 행사의 명칭 및 내용	행사명칭			
	행사내용			
변경신청내용	변경사항		변경 사유	
사용요금(원)			비고	

허 가 조 건

1. 「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 및 그 밖의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2.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.
3. 체험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.
4. 공연장 및 전시장 내에서는 음주 및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.
5.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,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6.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.
7. 행사 중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사용자가 수거·처리하여야 합니다.
8.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(사용일 3일 이내)에 납부하여야 하며,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 취소처리 됩니다.

「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(변경, 취소)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논 산 시 장 (인)

【별지 제3호서식】

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사용료 면제신청서

신 청 인	성명(법인명)		연락처(☎)	
	대표자명		법인번호	
	주 소			
이용시설 및 장소	연산문화창고	다목적홀(), 공유주방() 커뮤니티홀1(), 커뮤니티홀2() 프로그램실1(). 프로그램실2() 수제맥주공방()		
사용기간 및 시간	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(일 시간 회)			
사용목적				
면제종류	제14조제1항제1호 ()			
	제14조제1항제2호 ()			
	제14조제1항제3호 ()			
첨 부	행사목적을 명기한 행사 계획서 1부.			
「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.				
년 월 일				
신청인(대표자) :			(서명 또는 날인)	
논산시장 귀하				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세입
 - 제7조(프로그램 운영) : 프로그램 참가비
 - 제12조(사용료의 납부) : 시설 사용료
- 세출
 - 제4조(주요사업) : 시설 운영비

2. 비용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세입 :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사용료를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징수기준에 의거 산출/연간
 - ※ 예상 체험객 수 : 연산역 철도문화체험 참여인원 사례 수요 추정 결과 반영 (2019년 24,295명 *3개소 / 관광객 평균 증가율 1.19%)
 - ※ 주중·주말 시설점유율 100% 가정
- 세출 : 문화체험형 관광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관리운영비 등 산출/연간
 - ※ 운영비 : 기차길옆 여가놀이터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결과 운영비 추정 결과 반영(체험공간 m² 당 393,000원 그외시설 m² 당 19,800원 / 평균물가상승률 2.2%적용)

나. 추계결과

- 세입 : 1,073,580천원
 - 1) 프로그램 참가비
 - 74,628명 × 10,000원 = 746,280천원
 - 2) 시설 사용료
 - 30일 × 12개월 × 415,000원 = 149,400천원
 - 3) 시비 : 177,900천원
- 세출 : 1,073,580천원
 - 운영비 (2,500m² × 393,000원) + (4,600m² × 19,800원) = 1,073,580천원

다. 재원조달 방안

- 시비(지방비) 100%

3. 작성자

관광과장 김 영 민

〈연도별 비용추계표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세 입	1,073,580	1,097,198	1,121,336	1,146,005	1,171,217	5,609,336
프로그램 참가비	746,280	755,160	764,140	773,230	782,430	3,821,240
시설 사용료	149,400	149,400	149,400	149,400	149,400	747,000
시비	177,900	192,638	207,796	223,375	239,387	1,041,096
세 출	1,073,580	1,097,198	1,121,336	1,146,005	1,171,217	5,609,336
문화체험형 관광시설 운영비	1,073,580	1,097,198	1,121,336	1,146,005	1,171,217	5,609,336
재원 조달	1,073,580	1,097,198	1,121,336	1,146,005	1,171,217	5,609,336
의존 재원	소 계	0	0	0	0	0
	보조금	0	0	0	0	0
	지방교부세	0	0	0	0	0
자체 수입	소 계	1,073,580	1,097,198	1,121,336	1,146,005	1,171,217
	지방세	177,900	192,638	207,796	223,375	239,387
	세외수입	895,680	904,560	913,540	922,630	931,830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